

□ 動力資源部告示 (第82-17号)

—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및 補填에 관한 告示 —

石油事業法(이하“法”이라 한다) 第17條의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金額 및 法 第17條의 4 第3号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填基準을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令”이라 한다) 第9條의 4 및 第9條의 5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2. 3. 23.

動力資源部長官

1. 石油事業基金의 징수금액

가. 法 제17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金額은 수입원유 1배럴당 美合衆國 통화 2.20\$ (비축기금 1.50\$, 安定基金 0.7\$)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換率을 승한 金額으로 한다.

나. 今 제9조의4 제3항 제3호의 規定에 의한 수입 부담금과의 差額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어 1982년 3월 10일까지 통관된 原油에 대하여 수입 부담금 인하분(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의 0.11%)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換率을 승한 金額으로 한다.

2. 原油 및 石油製品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가. 原油導入先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導入 추가운송비의 보전

(1)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石油精製業者가 도입선 다변화 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의 차이를 今 제9조의5 제2항 제3호 및 동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산출보전하되 年末에 정산한다.

○ 손실보전기준 : $\frac{\text{多邊化운임} \times \text{실지급일의換率}}{\text{다변화 도입물량}}$

$\frac{\text{中東운임} \times \text{실지급일의換率}}{\text{中東지역 도입물량}} \times \text{다변화도입物量}$

(2)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規定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

○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 산출기준 : 최근년도의 실적치 ×

$\frac{\text{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 \times \text{최근년도의 평균 World Scale} \times$

$\frac{\text{평균운임요율(AFRA)}}{\text{평균운임요율(AFRA)}}$

(3) 導入先多邊化 대상지역이라 함은 美洲 및 아프리카地域을 말한다

나.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今 제9조의5 제2항 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製品의 수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의 基準은 수입석유제품 1배럴당 石油製品의 수입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선적일로부터 30일되는 날의 換率에서 국내석유제품의 稅前공장도가격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

부 칙

1. 이 告示는 1982년 3월 11일 이후 선적되는 原油分부터 적용한다.
2. 이 告示에 의한 原油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추가운송비의 보전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통관된 原油分부터 적용한다.
3. 동력자원부고시 제81-218호(81.12.9)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2년 3월 10일 이전에 선적된 原油와 1982년 3월말까지 原油공급계약에 의거 선적되어야 할 쿠웨이트 및 민간상사도입 사우디原油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